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강명숙 의원)

의안 번호	21-43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4. .

발의자: 강명숙, 권영숙, 김기석, 김성희,
김영미, 김진천, 장덕준, 한일용

1. 개정이유

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, 그에 비례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구의회 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재위탁·재계약의 경우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 마련(안 제5조제2항)

3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4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1. 4. 9. ~ 4. 14.

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【관 계 법 령】

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고광희
연 락 처	02-3153-8532